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상위법 통폐합에 따라 상위법 명칭을 현행화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상위법 명칭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 담당(계) 명칭 변경(안 제14조)
- 노·사·민·정 상생협약 내용변경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운용방법 변경(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명칭의 현행화와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해당 조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¹⁾으로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²⁾”의 지원·촉진을 위해 2022.12.30.에 제정된 조례로써
- 상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2023. 7. 4.)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2)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으로 합의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지역상생, 노사상생, 정부지원 등의 상생요소를 기반으로 고용, 투자, 복리 후생 분야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사업

- 다만 안 제19조는 “상생협력기금의 운영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한다”에서 “재단법인이 관리·운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개정(2023. 1. 19)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이 강화(2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재단 설립이 어려워진 점과 (재)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설립과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생형 일자리 협의체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3)에 따라 조정, 협의, 심의 등을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간주하여 일자리 협의체의 구성으로 심의·의결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구미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